

## 〈 창업희망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

1. 본 서류는 ‘대외 공개용 정보공개서’로서, 정보공개서 원본에서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모두 **비공개 처리**하여, 대외 공개하기에 적합하도록 바꾼 것입니다.

**원본을 확인하려는 경우 해당 가맹본부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가맹계약을 체결하시려는 경우, 반드시 가맹본부에게서 본 서류가 아닌 정보공개서 원본을 받아 보고, **14일의 숙고기간** 동안 그 내용을 검토해 보신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원본을 제공하지 않거나, 14일의 숙고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됩니다.

3. 본 서류의 내용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변경 등록하거나, 비공개 대상 항목이 변경되는 등의 경우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정보공개서 등록 번호 : 20214876  
정보공개서 최초등록일 : 2021.11.15  
정보공개서 최종등록일 : 2024.10.28

홈페이지: 없음

대표 이메일:

## [요거트바이피플]

### 정 보 공 개 서

‘바이피플’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 . . .

### 〈바이피플〉

#### 〈주 의 사 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번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추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가맹본부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서울시 동작구 상도로 346-2 204동 1704호

가맹본부의 대표전화번호 : 010-9088-9342

가맹본부의 대표팩스번호 : 없음

가맹사업담당 부서 및 전화번호 : 대표자, 010-9088-9342

## 목 차

###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 II. 가맹본부의 「요거트바이피플」 가맹사업 현황

### III.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 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된 정보공개서(<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한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1.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호   | 영업표지        | 주 소                          |         |               |        |
|------|-------------|------------------------------|---------|---------------|--------|
| 바이피플 | 요거트바이피플 외 5 | 서울시 동작구 상도로 346-2 204동 1704호 |         |               |        |
|      | 법인 설립등기일    | 사업자등록일                       | 대표자     | 대표전화번호        | 대표팩스번호 |
|      | 개인사업자       | 2020.12.12.                  | 이태경     | 010-9088-9342 | 없음     |
|      | 법인등록번호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번호 | 187-28-01178  |        |

###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당사의 특수관계인 중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 경영 경험이 있는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관계 | 이름/상호        | 영업표지           | 주 소                          |               |        |
|----|--------------|----------------|------------------------------|---------------|--------|
| 대표 | 이태경/<br>바이피플 | 요거트바이피플<br>외 5 | 서울시 동작구 상도로 346-2 204동 1704호 |               |        |
|    |              |                | 대표이사                         | 대표전화번호        | 대표팩스번호 |
|    |              |                | 이태경                          | 010-9088-9342 | 없음     |

###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당사는 바로 전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다른 기업(가맹사업 영업표지를 포함하여 가맹사업을 경영한 기업)을 인수·합병(다른 기업의 가맹 관련 사업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도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기업에 인수·합병된 내용은 없습니다.

###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의 내용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요거트바이피플]의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 구 분        | 내 용                                                                                 | 추가 설명                    |
|------------|-------------------------------------------------------------------------------------|--------------------------|
| 명 칭        | 요거트바이피플                                                                             | -                        |
| 상 호        | 바이피플                                                                                | -                        |
| 상표(서비스표)   |  | 서비스표 출원번호: 4020210003229 |
| 요거트바이피플 로고 |                                                                                     |                          |

### 5.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재무현황

1)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 연도    | 자산총계 | 부채총계 | 자본총계 | 매출액 | 영업이익 | 당기순이익 |
|-------|------|------|------|-----|------|-------|
| 2021년 |      |      |      | 0   |      |       |
| 2022년 |      |      |      | 0   |      |       |
| 2023년 |      |      |      | 0   |      |       |

2)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개시 이전으로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음.

###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관련여부              | 이름      | 현 직위 | 사업경력          |         |       |
|-------------------|---------|------|---------------|---------|-------|
|                   |         |      | 기간            | 직위      | 담당 업무 |
| 가맹사업<br>관련 임원     | 이태경     | 대표이사 | 2020.12. ~ 현재 | 바이피플 대표 | 경영 총괄 |
| 가맹사업<br>비관련<br>임원 | 해당사항 없음 |      |               |         |       |

###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당사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시점            | 임원수(명) |     | 직원수(명) |
|---------------|--------|-----|--------|
|               | 상근     | 비상근 |        |
| 2023년 12월 31일 | 1      | 0   | 0      |

##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가맹사업을 경영하였거나 경영하고 있습니다.

| 관계   | 상호/이름 | 구분      | 기간                        | 사업내용                                                        |
|------|-------|---------|---------------------------|-------------------------------------------------------------|
| 가맹본부 | 바이피플  | 가맹사업 경영 | 2021.11 ~ 현재<br>(가맹사업 예정) | ‘피자바이피플’<br>이라는 영업표지의<br>피자전문점 경영 예정<br>(정보공개서 등록신청 중)      |
|      |       |         |                           | ‘카페바이피플’<br>이라는 영업표지의<br>커피전문점 경영 예정<br>(정보공개서 등록신청 중)      |
|      |       |         |                           | ‘치킨바이피플’<br>이라는 영업표지의<br>치킨전문점 경영 예정<br>(정보공개서 등록신청 중)      |
|      |       |         |                           | ‘브레드바이피플’<br>이라는 영업표지의<br>제과 제빵 전문점 경영 예정<br>(정보공개서 등록신청 중) |
|      |       |         |                           | ‘반찬바이피플’<br>이라는 영업표지의<br>반찬 판매 전문점 경영 예정<br>(정보공개서 등록신청 중)  |
|      |       |         |                           | ‘요거트바이피플’<br>이라는 영업표지의<br>요거트음료 경영 예정<br>(정보공개서 등록신청 중)     |

##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 명칭                                                                                  | 권리내용             | 출원<br>및 신청여부<br>(일자) | 출원번호 및 등록번호             | 소유자<br>(등록신청자) | 존속기간<br>만료일                                                    |
|-------------------------------------------------------------------------------------|------------------|----------------------|-------------------------|----------------|----------------------------------------------------------------|
|  | 가맹점<br>상호로<br>사용 | 출원신청<br>(2021.01.07) | 〈출원번호〉<br>4020210003229 | 이태경            | 출원공고상태<br><br>(공고번호:<br>4020210140341<br>공고일자:<br>2021.11.04.) |
|                                                                                     |                  |                      | 〈등록번호〉<br>없음            |                |                                                                |

당사의 지식재산권은 상표권 출원중에 있으므로 관계법으로 보호받지 못합니다.

또한 귀하가 가맹계약서상에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상표를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 표. 가맹본부의 [요거트바이피플] 가맹사업 현황

1. 해당 가맹사업을 시작한 날 : 가맹계약 체결 이전

2. [요거트바이피플] 가맹사업 연혁

| 가맹본부<br>상호 | 영업표지        | 대표자의<br>이름 | 가맹사업 경영 기간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
| 바이피플       | 요거트<br>바이피플 | 이태경        | 가맹사업 개시 전  | 서울시 동작구 상도로 346-2 204동<br>1704호 |

3. [요거트바이피플] 업종

| 영업표지    | 업종  |           |
|---------|-----|-----------|
| 요거트바이피플 | 대분류 | 소분류(주요상품) |
|         | 커피  | 커피        |

4. 바로 전 3년간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요거트바이피플]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 지역 | 2023.12.31. |      |      | 2022.12.31. |      |      | 2021.12.31. |      |      |
|----|-------------|------|------|-------------|------|------|-------------|------|------|
|    | 전체          | 가맹점수 | 직영점수 | 전체          | 가맹점수 | 직영점수 | 전체          | 가맹점수 | 직영점수 |
| 전체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서울 |             |      |      |             |      |      |             |      |      |
| 부산 |             |      |      |             |      |      |             |      |      |
| 대구 |             |      |      |             |      |      |             |      |      |
| 인천 |             |      |      |             |      |      |             |      |      |
| 광주 |             |      |      |             |      |      |             |      |      |
| 대전 |             |      |      |             |      |      |             |      |      |
| 울산 |             |      |      |             |      |      |             |      |      |
| 세종 |             |      |      |             |      |      |             |      |      |
| 경기 |             |      |      |             |      |      |             |      |      |
| 강원 |             |      |      |             |      |      |             |      |      |
| 충북 |             |      |      |             |      |      |             |      |      |
| 충남 |             |      |      |             |      |      |             |      |      |
| 전북 |             |      |      |             |      |      |             |      |      |
| 전남 |             |      |      |             |      |      |             |      |      |
| 경북 |             |      |      |             |      |      |             |      |      |
| 경남 |             |      |      |             |      |      |             |      |      |
| 제주 |             |      |      |             |      |      |             |      |      |

5. 최근 3개 사업연도 말 [요거트바이피플] 가맹점 수

| 연도   | 연초<br>(1월 1일) | 신규 개점 | 계약 종료 | 계약 해지 | 명의 변경 | 연말<br>(12월 31일) |
|------|---------------|-------|-------|-------|-------|-----------------|
| 2023 | 0             | 0     | 0     | 0     | 0     | 0               |
| 2022 | 0             | 0     | 0     | 0     | 0     | 0               |
| 2021 | 0             | 0     | 0     | 0     | 0     | 0               |

6. [요거트바이피플]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현황

당사는 바로 전 3년간 [요거트바이피플] 외에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고있는 가맹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상호/이름 | 영업표지          | 정보공개서<br>등록번호 | 업종 | 가맹점/직영점의 수  |             |              |
|------|-------|---------------|---------------|----|-------------|-------------|--------------|
|      |       |               |               |    | 2021.12.31. | 2020.12.31. | 2019.12.31.  |
| 가맹본부 | 바이피플  | '피자바이<br>피플'  | 20214875      | 피자 | 0/0         | 0/0         | 가맹사업<br>개시 전 |
| 가맹본부 | 바이피플  | '카페바이<br>피플'  | 20214874      | 카페 | 0/0         | 0/0         | 가맹사업<br>개시 전 |
| 가맹본부 | 바이피플  | '치킨바이<br>피플'  | 20214943      | 치킨 | 0/0         | 0/0         | 가맹사업<br>개시 전 |
| 가맹본부 | 바이피플  | '브레드바<br>이피플' | 20214873      | 제과 | 0/0         | 0/0         | 가맹사업<br>개시 전 |
| 가맹본부 | 바이피플  | '반찬바이<br>피플'  | 20214877      | 식품 | 0/0         | 0/0         | 가맹사업<br>개시 전 |
| 가맹본부 | 바이피플  | '요거트바<br>이피플' | 20214876      | 음료 | 0/0         | 0/0         | 가맹사업<br>개시 전 |

7.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기준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 지역 | 연도 말<br>가맹점 수 | 2023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 |      |    |      |    |      | 산출<br>가맹점 수 |
|----|---------------|-------------------------|------|----|------|----|------|-------------|
|    |               | 연간 평균 매출액               |      | 상한 |      | 하한 |      |             |
|    |               | 매출액                     | 면적 당 | 상한 | 면적 당 | 하한 | 면적 당 |             |
| 전체 | 0             | 0                       | 0    | 0  | 0    | 0  | 0    | 0           |
| 서울 |               |                         |      |    |      |    |      |             |
| 부산 |               |                         |      |    |      |    |      |             |
| 대구 |               |                         |      |    |      |    |      |             |
| 인천 |               |                         |      |    |      |    |      |             |
| 광주 |               |                         |      |    |      |    |      |             |
| 대전 |               |                         |      |    |      |    |      |             |
| 울산 |               |                         |      |    |      |    |      |             |
| 세종 |               |                         |      |    |      |    |      |             |
| 경기 |               |                         |      |    |      |    |      |             |
| 강원 |               |                         |      |    |      |    |      |             |
| 충북 |               |                         |      |    |      |    |      |             |
| 충남 |               |                         |      |    |      |    |      |             |
| 전북 |               |                         |      |    |      |    |      |             |
| 전남 |               |                         |      |    |      |    |      |             |
| 경북 |               |                         |      |    |      |    |      |             |
| 경남 |               |                         |      |    |      |    |      |             |
| 제주 |               |                         |      |    |      |    |      |             |

8. [요거트바이피플]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 연도   | 영업 중인 가맹점 수 | 평균 영업기간 |
|------|-------------|---------|
| 2023 | 0           | 0       |

##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해당없음.

## 10. 광고·판촉 지출 내역

2023년 광고·판촉 지출 비용이 없습니다.

## 11. 가맹금 예치 기관

당사는 가맹금을 가맹점 영업개시 이후나 가맹계약 체결 2개월 후에 수령하고 있어 귀사가 수령하는 가맹금은 예치대상이 아닙니다.

## 11.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당사는 가맹금을 가맹점 영업개시 이후나 가맹계약 체결 2개월 후에 수령하고 있어 귀사가 수령하는 가맹금은 예치대상이 아닙니다.

##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 1. 공정거래위원 또는 시도 지사의 시정조치

당사는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간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조치 등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는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간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와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 3. 형(刑)의 선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간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오거트바이피플]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금액이 소요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냉난방기 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다양하나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지급 대상         | 예치 대상 여부 | 비고 |
|--------|---------------|----------|----|
| 가맹비    | 가맹본부          | 대상 아님    |    |
| 오픈 교육비 | 가맹본부          | 대상 아님    |    |
| 보증금    | 가맹본부          | 대상 아님    |    |
| 기타 비용  | 가맹본부 또는 협력 업체 | 대상 아님    |    |

#### 1) 최초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 구분  | 금 액   | 지급기한                        | 반환 조건          | 반환될 수 없는 사유          | 비 고 |
|-----|-------|-----------------------------|----------------|----------------------|-----|
| 총 계 | 6,600 |                             |                |                      |     |
| 가맹비 | 5,500 | 가맹계약 체결 2개월 이후 또는 영업개시 일 이후 | 가맹점 오픈 전 해지    | 가맹점 모집을 위해 소요된 실제 비용 |     |
| 교육비 | 1,100 |                             | 교육시작 1일 전 계약해지 | 교육실시 이후              |     |

#### 2) 보증금은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보증금은 계약 종료시 전액이 귀하에게 반환되는 대가입니다. 다만, 귀하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없음)

| 구 분      | 금액    | 지급 기한   |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 비 고 |
|----------|-------|---------|-------------------------------|-----|
| 계약이행 보증금 | 2,000 | 계약 후 즉시 | 계속가맹금의 미지급, 계약기간 중 대금의무 불이행 등 |     |

####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당사는 가맹금을 가맹점 영업개시 이후나 가맹계약 체결 2개월 후에 수령하고 있어 귀사가 수령하는 가맹금은 예치대상이 아닙니다.

#### 4) 귀하가 그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귀하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품의 품목은 [18]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10평기준(1평=3.3㎡)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 구분     | 지급대상  | 금액     | 3.3㎡ 당 금액 | 지급 기한        | 반환조건      | 반환불가 사유 | 비고 |
|--------|-------|--------|-----------|--------------|-----------|---------|----|
| 총계     |       | 36,500 | 4,00      |              |           |         |    |
| 주방설비 등 | 업체미지정 | 10,000 | 1,000     | 추후 별도계약      | 제작 전 계약취소 | 제작개시 후  |    |
| 인테리어   | 업체미지정 | 20,000 | 2,000     | 가맹점사업자 자율계약  | -         | -       |    |
| 간판     | 업체미지정 | 3,000  |           | 가맹점사업자 자율계약  | -         | -       |    |
| 포스     | 업체미지정 | 1,500  |           | 가맹점사업자 자율계약  | -         | -       |    |
| 홍보물    | 본부    | 2,000  |           | 계약 체결 시 100% | 제작 전 계약취소 | 제작개시 후  |    |
| 초도물품   | 자율    | 0      |           |              |           |         |    |

위 표의 금액은 배달전문 점포 10평을 기준으로 산정된 것이며, 면적 크기 및 개별 점포의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당사가 사업장 운영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실제 지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당사는 인테리어 업체를 별도로 지정하지 않으며, 인테리어 설계도 및 시방서를 제공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인테리어를 직접 시공함에 따라 당사의 인테리어 컨셉과 도면사용 및 감리 인력지원 등의 감리비로 3.3제곱미터 마다 330,000원(부가세포함)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간판공사는 인허가 규정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 별도사항

도시가스공사, 전기승압공사, 냉난방기, 외부공사, 테라스, 사시, 조형물, 철거공사, 상하수도 등

###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 선정 주체  | 선정 기준                                             |
|--------|---------------------------------------------------|
| 가맹점사업자 | 가맹상담→가맹본부와 협의 후 가맹희망자가 직접 희망영업지역 파악→가맹본부 검토→입지 확정 |

가맹점사업자는 자신의 책임으로 점포의 입지를 선정합니다. 가맹점사업자의 입지선정에 당사는 해당 행정구역상의 구분, 시장의 특성, 주요한 근린시설, 업종특성에 따른 매출성향 등을 고려하여 해당 점포의 실사를 통하여 가맹희망자에게 조언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가 조언한 경우라도 최종 의사결정권은 가맹점사업자에게 있습니다.

###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채용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교육 기준                             | 계약·채용 기준                                          |
|--------|-----------------------------------|---------------------------------------------------|
| 가맹점사업자 | 국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을 것, 당사의 경영방침을 준수할 것 |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없을 것, 만19세 이상일 것 |
| 종업원    | 특별한 기준 없음, 당사의 경영방침을 준수할 것        | 만18세 이상일 것                                        |

###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공급업체

요거트바이오피플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물품이 필요합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 8) 귀하가 당사에 납부하는 가맹금은 분납할 수 없으며, 일시불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2. 영업 중의 부담

### 1) 비용 부담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 지급해야 하는 정기 또는 부정기 지급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 구분                     | 지급대상                                                              | 금액                             | 지급기한                | 반환조건/<br>반환불가 사유 | 비고                                           |
|------------------------|-------------------------------------------------------------------|--------------------------------|---------------------|------------------|----------------------------------------------|
| 로열티                    | 가맹본부                                                              | 월 매출액의 3.3%                    | 매월 5일 또는 별도로 지정한 기한 | 후불로 반환 안됨        | -                                            |
| 광고 분담금                 |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8. 광고 및 판촉 활동<br>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분담 기준 참고 |                                |                     |                  |                                              |
| 모바일상품권 수수료분담금          | 가맹본부                                                              | 전체수수료의 50%                     | 별도로 지정한 기한          | 후불로 반환 안됨        | -                                            |
| 개점 이후 교육 훈련비           |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훈련의 주요 내용,<br>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참고     |                                |                     |                  |                                              |
|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 변경 비용 | 가맹본부                                                              | 본부: 변경비용의 25%<br>귀하: 변경비용의 75% | -                   | -                | 경영방침, 유행의 변화 등 부득이한 경우 변경될 수 있음              |
| 시설, 각종 기기의 교체·보수비용     | 가맹본부 및 협력업체(미정)/개별 구입시 점주 직접 교체보수                                 | -                              | -                   | -                | 교체·보수 필요시 시설, 기기 등의 내구연수 등을 감안하여 당사와 협의하여 결정 |
| 점포환경개선 비용              |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br>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참고           |                                |                     |                  |                                              |
| POS 사용료                | -                                                                 | 업체와의 계약에                       | -                   | -                | -                                            |

|      |      | 따름      |                                                             |                           |   |
|------|------|---------|-------------------------------------------------------------|---------------------------|---|
| 지연이자 | 가맹본부 | 연이율 20% | 금전지급의무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미지급액에 대하여 지급기일의 다음날로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지연이자 가산 | 금전지급의무의 이행 지체에 대한 지연이자 성격 | - |

##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의 2023년도 평균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기준: 2023년)                   | 내용 |
|---------------------------------|----|
|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단위: 천원)      | -  |
| 가맹점당 평균매출액 대비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의 비율 | -  |

당사는 가맹사업을 예정하고 있어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당사는 귀하의 영업 상황에 대하여 일정한 감독을 실시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당사는 위 표 외에도 가맹점사업자의 위생, 재고관리 등을 포함한 점포 경영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가맹점사업자의 점포를 점검하고 기준에 위반하는 결과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 영업과 관련하여 영업장부, POS, ERP시스템, 회계장부(이하 회계자료라고 한다)를 성실히 작성·유지하여야 하며, 상품 구입과 판매에 관한 회계자료 등 당사의 통일적 사업경영 및 판매 전략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보관하고 당사의 청구가 있으면 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한 자료의 확인과 기록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는 당사의 직원이 점포에 출입하여 조사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합니다.

##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기 위해서 당사에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은 없습니다.

###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 종료 시 조치사항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 승계 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귀하는 가맹사업을 양수한 사업자와 가맹계약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귀하가 새로운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없으면 기존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가맹계약을 해지할 경우, 당사가 귀하로부터 수령한 가맹금 중 이행의무가 남아있는 부분이 있을 경우 귀하는 계약 해지와 함께 당사의 귀책 정도에 따라 가맹금 중 미 이행 부분 중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사용을 허락한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이를 가맹점사업자가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사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가맹점사업자는 변경된 영업표지를 사용하도록 협조하여야 합니다.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되는 경우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이 경우 당사가 귀하로부터 수령한 가맹금 중 이행의무가 남아있는 부분이 있는 경우 귀하는 계약 해지와 함께 당사의 귀책 정도에 따라 가맹금 중 미이행 부분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귀하가 가맹점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 양도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양수 가맹점사업자는 양수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고, 교육비 금일백일십만원(₩1,100,000, 부가세 포함), 계약이행보증금 금일백만원(₩2,000,000) 등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가맹점사업자는 아래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가맹본부에게 사용 허가를 받은 영업표지가 인쇄된 간판 및 기타 표시물, 이미지, 디자인물 등 일체를 즉시 철거하여야 합니다. 이때 철거 비용은 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가 가맹본부의 귀책사유로 인해 종료되는 경우 외에는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합니다.

가맹본부로부터 사용 허가를 얻어 사용하던 상호, 간판, 기타 표시물 등을 변형하여서는 아니됩니다.

협력업체 또는 가맹본부로부터 지원받은 기기 등을 임의 철거를 하지 못하며 지원받은 품목을 반환해야 하며, 지원받은 품목의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전으로 배상하여야 합니다.

가맹점 운영에 관한 모든 관계 서류를(계약서, 매뉴얼 등)을 반환하여야 하며, 가맹본부가 제공한 컴퓨터 파일은 삭제하여야 하고, 시스템, 온라인 아이디 등의 사용을 즉시 중단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계약 종결을 이유로 이미 제공한 공급품을 가맹본부에 반환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계약 유효기간 동안이나 종결 후에도 경쟁 관계에 있는 자에게 영업내용이나 고객을 넘겨주는 행위 또는 가맹본부의 신용을 해치거나 비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또한 고객 정보는 계약이 종료된 날로부터 가맹본부의 소유이며, 가맹점사업자는 이를 삭제하거나 유출하여서는 아니 되고 가맹본부의 안내에 따라 처리하여야 합니다.

온·오프라인 또는 유선상 가맹본부 또는 양지말화로구이를 나타내는 모든 콘텐츠, 사이트, 전화번호, 지역 정보 등을 즉시 삭제하여야 합니다.

##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 1. 물품 구입 및 임차

1) 귀하가 요거트바이피플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해야 할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물품을 지정된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에게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 다른 품목도 추가할 수 있으며 홈페이지, 개별공지 등을 통하여 변경 사항을 안내합니다. 자세한 내역은 계약체결 시 매장 실측 후 별도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거래상대방을 권장하는 품목의 경우 규격은 귀하가 매장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며 요거트바이피플의 통일성과 판매 메뉴 및 서비스의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허용합니다.

나)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당사는 가맹사업을 예정하고 있어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귀하가 요거트바이피플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의 특수관계인이 수취하는 경제적 이익은 없습니다.

### 2. 거래 강제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1) 당사는 요거트바이피플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권장하는 대가로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가맹사업을 예정하고 있어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2) 당사가 요거트바이피플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가맹사업을 예정하고 있어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구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구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상품·구역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품·구역명            | 제한내용 및 조건                                                                                       | 위반시 책임                  |
|-------------------|-------------------------------------------------------------------------------------------------|-------------------------|
| 홈페이지 또는 개별 공지에 따름 | 브랜드의 통일성 및 서비스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왼쪽에 기재된 이외의 제품을 판매할 수 없으며 당사가 제시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적절한 품질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시정요구, 상품공급의 중단 또는 계약 해지 |

귀하가 당사가 승인하지 않은 상품·구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상기 표에 기재된 상품·구역 이외에도 가맹사업의 개선, 고객 니즈의 변화, 경쟁업체의 출현, 시장변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가맹사업 전체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으로 기존 메뉴의 변경 또는 추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못하며 가맹본부가 지정한 상품·구역만을 판매해야 합니다.

### 2) 거래상대방에 따른 상품·구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구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고객에 대해 상품·구역을 판매하지 않아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거래상대방(고객)       | 상품·구역명                                                     | 제한내용 및 조건                   | 위반 시 책임                 |
|-----------------|------------------------------------------------------------|-----------------------------|-------------------------|
| 경쟁업체, 다른 가맹점사업자 | 당사 또는 당사의 지정 업체로부터 공급받은 원부자재 및 상품 일체, 당사가 가맹점에서 판매를 지정한 상품 | 거래상대방별로 기재된 상품·구역은 판매할 수 없음 | 시정요구, 상품공급의 중단 또는 계약 해지 |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에게 제한된 상품·구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고객)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고 있습니다.

###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당사는 시장 상황이나 소비자의 동향 또는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장 적절하고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 소비자 판매가를 정하여 권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

점사업자가 권장가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사가 정한 소정 양식에 의하여 그 취지를 통지하고 당사와 사전협의하여야 합니다.

##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 1) 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 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 기간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동일한 업종 범위        |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       |
|------------------|-------------|-------|
|                  | 가맹본부        | 계열회사  |
| 요거트 음료류를 판매하는 업종 | 요거트바이피플     | 해당 없음 |

### 2) 영업지역 설정 기준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 설정 기준                                                                                                                                                                                                                                                            | 설정 방법           |
|------------------------------------------------------------------------------------------------------------------------------------------------------------------------------------------------------------------------------------------------------------------|-----------------|
| 가맹점의 중앙을 기준으로 반경 500m 단, 특수상권(백화점, 쇼핑몰, 마트, 시장, 영화관, 극장, 역사, 지하상가, 공항, 고속도로 휴게소, 대형병원, 학교, 관공서, 호텔, 리조트, 군부대 등)은 별도의 영업지역으로 귀하의 영업지역에서 제외됨. 특수상권은 계약체결 당시 존재하는 특수상권을 비롯하여 계약 기간 중에 신설되는 특수상권도 귀하의 영업지역에서 제외됨. 만일 귀하의 매장이 특수상권에 위치하는 경우 귀하의 영업지역은 해당 특수상권 내로 한정함. | 계약서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

###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 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 재조정 절차                                | 동의를 얻는 방법                        |
|-----------------------------------------------------|---------------------------------------|----------------------------------|
| ①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 재조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 | 영업지역 변경(안)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
| ②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                                       |                                  |

|                                                                                                                     |                                           |                                                     |
|---------------------------------------------------------------------------------------------------------------------|-------------------------------------------|-----------------------------------------------------|
| 경우<br>③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br>④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영업지역 변경 완료 | 여부 확인<br>동의를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영업지역 재조정 완료(신규 점포 입점 가능) |
|---------------------------------------------------------------------------------------------------------------------|-------------------------------------------|-----------------------------------------------------|

####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약정한 영업지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역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둘째,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정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셋째,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요거트바이피플 영업표지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요거트바이피플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 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 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 7)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에 대하여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단위: %)

| 연도   |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sup>①</sup> |         |               |                     |
|------|------------------------------------|---------|---------------|---------------------|
|      |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         |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                     |
|      | 가맹점                                | 기타 오프라인 | 자사 온라인몰       | 기타 온라인 <sup>②</sup> |
| 2023 | 0                                  | 0       | 0             | 0                   |

####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단위: %)

| 연도   |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sup>①</sup> |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sup>②</sup> |
|------|---------------------------|--------------------------|
| 2023 | 0                         | 0                        |

### 6. 계약 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 1) 가맹계약 및 갱신 기간

요거트바이피플 가맹사업의 계약 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간 유효하며 갱신 시에는 1년으로 계약 기간이 연장됩니다.

####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집니다. 다만 당사에 게 정당한 사유(갱신거절 사유)가 있는 경우 재계약 또는 계약 연장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순 서                                           | 기간(계약만료일: D-day) |
|-----------------------------------------------|------------------|
|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br>예→②, 아니오→⑦        | D-180~D-90       |
| ②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br>예→④, 아니오→③    | D-180~D-90       |
|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br>예→⑤, 아니오→A  | D-180~D-90       |
|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 ①+15일 이내         |

|                                                           |            |
|-----------------------------------------------------------|------------|
| 예→B, 아니오→A                                                |            |
|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br>예→C, 아니오→⑥                 |            |
|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입니까?<br>예→B, 아니오→D |            |
|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br>예→B, 아니오→⑧     | D-180~D-90 |
| ⑧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br>예→E, 아니오→A    | D-60일 이전   |
|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 D-day      |
| B. 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 D-day      |
|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 D-day      |
|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                                  | -          |
|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 -          |

### 3) 계약 갱신 거절 사유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갱신요구 거절 사유                                                                                | 관련 계약조문 |
|-------------------------------------------------------------------------------------------|---------|
|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하는 경우                                                           | 6조 2항   |
|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귀하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         |
|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을 하지 못한 경우                                     |         |
|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기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                                   |         |
|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                                                     |         |
|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다만, 교육·훈련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 |         |

###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당사는 아래와 같은 계약 해지 사유 발생 시 2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2회 이상 서면 시

정요구를 하며 이에 대하여 가맹점사업자의 시정이 없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계약 해지 사유                                                                                             | 관련 계약조문        |         |
|------------------------------------------------------------------------------------------------------|----------------|---------|
| 가맹점사업자가 점포의 규모, 대표자 등의 가맹점의 표시에 해당하는 사항을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                                                 | 3조 2항~3항       | 25조 각 호 |
| 가맹점사업자가 당사가 허용한 영업표지의 사용범위 외에 서면 동의 없이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경우                                                 | 4조 3항          |         |
| 가맹점사업자가 당사가 보유한 영업표지를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양도한 경우                                                              | 4조 4항          |         |
| 가맹점사업자가 공급품 대금 및 기타 대금의 약정한 납입기일을 경과하는 경우                                                            | 8조~9조, 16조~17조 |         |
| 가맹점사업자가 개점 이후의 교육 참석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                                                              | 17조            |         |
| 가맹점사업자가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 18조            |         |
|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제3자 명의로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 19조            |         |
| 가맹점사업자가 관리·감독 기준에 의한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 21조 1항         |         |
| 가맹점사업자가 승인받지 않은 제품을 판매하거나 통일성 유지를 위한 요구 품목을 사용하지 않아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저해하는 경우                               | 22조 1항~4항      |         |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 사전협의 없이 가격을 임의적으로 변경하는 경우                                                              | 22조 5항         |         |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은 상품에 대하여 가맹점 판매용도 이외로 사용할 경우                                                     | 23조 10항        |         |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승인받지 않고서 요구 품목을 자점매입 하거나 품질검사에 2회 이상 응하지 않는 경우                                       | 24조            |         |
| 가맹점사업자 및 매장근무자가 복장 규정을 위반하거나 영업시간과 휴업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 26조~27조        |         |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승인 없이 가맹점 설비를 임의적으로 변경하는 경우                                                            | 28조            |         |
| 가맹점사업자가 회계자료 통지 등의 통지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                                                                   | 29조            |         |
| 가맹점사업자가 공동으로 시행되는 광고의 광고비 분담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                                                      | 30조            |         |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승인 없이 판촉물 등을 제작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 및 이미지를 훼손하는 경우                                             | 31조 2항         |         |
| 가맹점사업자가 공동으로 시행되는 판촉 활동에 정당한 이유 없이 참여를 거부하는 경우                                                       | 31조 3~4항       |         |
| 가맹점사업자가 주요 운영 지침을 위반하는 경우                                                                            | 32조 각항         |         |
| 가맹점사업자가 사전 승인 없이 양도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 38조 1항         |         |
|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점사업자의 피고용인이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당사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 25조 21호        | 25조 22호 |
| 기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 내용 및 별도 약정한 계약 내용을 위반한 경우                                                            | 25조 22호        |         |
|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2개월 이상 개점이 지연되거나 최초 개설 비용의 지급을 지키지 않는 경우                                               | 33조 제1항 제2호    |         |

다만,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의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아래의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이나 2회 이상의 서면 통지 없이 계약서에 따른 절차를 거쳐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즉시 계약 해지 사유                                                                                                                                                                                                                          | 관련 계약조문  |
|--------------------------------------------------------------------------------------------------------------------------------------------------------------------------------------------------------------------------------------|----------|
|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 33조 3~4항 |
|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정지 된 경우                                                                                                                                                                                                  |          |
|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          |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 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          |
| 1) 그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2) 그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3) 그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          |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
| 가맹점사업자가 법 제14조 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 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          |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          |
|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          |
|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          |

##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관련법의 제정 및 개정 또는 양 당사자 사이의 서면 합의, 경영방침의 변경이 있을 시에는 귀하에게 사전 통보한 후에 계약 조건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 갱신 시 변경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 180일에서 90일 사이에 계약의 변경 조건을 통지하고 재계약 여부를 묻게 됩니다.

## 6.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당사는 가맹점운영권 환매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양도 가능 조건                  | 양도 절차                                                                                                                                    |
|---------------------------|------------------------------------------------------------------------------------------------------------------------------------------|
|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 | 60일 전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당사 담당팀 검토(필요시 양수인 면담)→승인 여부 통지(양도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양도 계약 체결(승낙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

당사가 양도를 승인하면 양수인은 양도인의 모든 권리 의무를 승계하게 되며 양수에 따른 교육 이수를 하여야 하고 교육비 금일백일십만원(₩1,100,000, 부가세 포함), 계약이행보증금 금이백만원(₩2,000,000)등을 당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양수인이 원할 경우 당사는 양수인과 신규 가맹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규 가맹계약일지라도 가맹점 모집비용, 개점행사비 등이 일반적인 신규 가맹계약보다 적게 소요되는 경우에는 비용 소요액에 상응하는 가맹금을 당사와 협의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개인 사정 등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대리 행사하게 하거나 위탁 경영을 하게 할 경우에는 당사에 사전에 서면으로 동의를 구하여야 합니다. 또한 당사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가맹점사업자의 상속인은 가맹점 영업의 상속과 관련하여 민법상의 규정에 따르며, 가맹점营业을 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상속인이 영업을 개시하기 5일 전까지 교육비 금일백일십만원(₩1,100,000, 부가세 포함), 계약이행보증금 금이백만원(₩2,000,000)을 당사에 납부하고 개점 전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가맹점사업자의 상속인이 개점 전 교육비와 계약이행보증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교육 상태가 미흡한 경우 또는 가맹사업을 하는 데에 있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할만한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의 상속인의 가맹점营业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개점이 지연되는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가맹점사업자의 상속인이 전적으로 책임을 집니다.

## 7.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 1) 경업금지의 범위

가맹점사업자는 계약 기간 중과 계약이 종료된 날로부터 1년까지 본인 또는 가족의 명의로 당사의 허락 없이 요거트바이오피플과 동종업종(타사 가맹점, 독립점포 및 가맹본부 경영을 포함한다)을 경영하여서는 안 됩니다.

계약 종료 후 당사의 허락 없이 본인 또는 가족의 명의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요거트바이오피플의 영업비밀이 침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가맹점사업자에게 금지되는 경업금지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경업금지 되는 업종      |
|-----------------|
| 요거트 음료를 판매하는 업종 |

경업금지 의무는 가맹계약의 당사자로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가맹점을 실제로 운영한 실 운영자가 있는 경우 또는 가맹계약의 당사자로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공동으로 운영한 동업자가 있는 경우 가맹점사업자와 동일하게 준수하여야 합니다.

##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당사는 요거트바이피플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영업시간          | 영업일수           | 비고 |
|---------------|----------------|----|
| 10:00 ~ 22:00 | 주 6일, 월 25일 이상 |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10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사의 사전 동의 없이 3일 이상 휴업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의 종업원 및 근무 형태를 제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권장 종업원 수 | 직접 근무 여부 | 대체 가능 인력      | 비고 |
|----------|----------|---------------|----|
| -        | 필수 아님    | 당사의 교육을 이수한 자 | -  |

##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를 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리·감독 절차는 경영상의 결정에 따라 아래 내용에서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 8. 광고 및 판촉 활동

###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분담 기준

당사는 요거트바이피플 영업표지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전국 단위의 광고 및 판촉 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와 나누어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광고 성격                 | 부담비율                |                     | 분담 절차                                |
|-----------------|-----------------------|---------------------|---------------------|--------------------------------------|
|                 |                       | 본사부담                | 가맹점부담               |                                      |
| 광고 전체 행사        | 상품광고, 브랜드 광고          | 광고비의 25%            | 광고비 75% /가맹점사업자수    | 광고 계획 공고, 가맹점부담액 제시→1주일 내 납입         |
|                 | 상품광고, 브랜드 광고+가맹점모집 광고 | 광고비의 50%            | 광고비 50% /가맹점사업자수    |                                      |
|                 | 가맹점 모집광고              | 전액 부담               | -                   | -                                    |
| 판촉행사            | 공동 판촉활동               | 기획비용                | 제작비용 및 할인비용         | 행사계획 공고, 가맹점부담액 제시→1주일 내 납입          |
|                 | 개별 판촉활동               | -                   | 관련 제작실비 전액          |                                      |
| 할인카드, 멤버십 제휴서비스 | 제휴행사                  | 서비스로 인한 월 할인금액의 50% | 서비스로 인한 월 할인금액의 50% | 월 할인금액 제시→자료 제출일로부터 10일 이내 가맹점부담액 송금 |
| 배달 어플리케이션, 카드사  | 제휴행사                  | 서비스로 인한 월 비용의 50%   | 서비스로 인한 월 비용의 50%   | 월 비용 제시→자료 제출일로부터 10일 이내 가맹점부담액 송금   |

###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판촉 활동

개별 가맹점사업자가 스스로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와 함께 독자적으로 광고·판촉 활동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판촉 활동 등을 위한 팜플렛, 카달로그, 쿠폰 등의 홍보물에 대하여 브랜드의 통일성 및 이미지 유지를 위하여 가맹본부와 사전 협의하여야 합니다.

## 9.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귀하는 계약체결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계약 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교육과 세미나 자료 기타 가맹점 운영과 관련하여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 서류의 내용을 인쇄 또는 복사할 수 없습니다.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귀하는 그 직원에 의한 영업비밀의 의무위반에 대하여도 관리감독상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가맹점사업자의 관리 감독상의 의무는 본 계약의 성립 시점부터 종료한 후 3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지속됩니다.

#### 10. 가맹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이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당사가 귀하에게 제공하는 가맹계약서의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
| 귀하가 제35조에 의한 위약벌 이외에 당사 또는 귀하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를 입은 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36조<br>1~4항 |
| 당사 또는 당사의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귀하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당사는 귀하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
| 귀하가 당사에 지급하여야 하는 금전을 할인 또는 면제하였거나 무상으로 귀하에게 물품을 지원한 경우에 귀하가 당사의 귀책사유 없는 이유로 계약기간 내에 해지를 하거나 귀하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귀하는 당사가 할인 또는 면제한 금전을 당사에 지급하여야 한다. 당사로부터 무상으로 지원받은 물품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받은 당시의 가액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             |
| 귀하 또는 귀하의 피고용인이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당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귀하는 당사에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40조<br>1항   |
| 본 계약에 규정된 금전 지급의무 또는 본 계약의 위반으로 부담하는 금전 지급의무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지급기일을 경과하면 미지금액에 대하여 지급기일의 다음날로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연 이율(20%)의 지연이자를 가산한다.                                                                                      |             |

| 위약벌 사유                                                                                                                                                                                                                                                  | 관련 계약조문     |
|---------------------------------------------------------------------------------------------------------------------------------------------------------------------------------------------------------------------------------------------------------|-------------|
| 귀하는 계약 기간 내 또는 계약 종료 이후 제18조(비밀유지 의무) 또는 제19조(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귀하는 당사에게 위약벌로 각각 금오천만원(₩50,000,000)을 지급하여야 한다.                                                                                                                                          | 35조<br>1~4항 |
| 귀하가 제23조 제1항의 공급품에 대하여 제24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자점매입을 한 경우 귀하는 당사에게 위약벌로 금오천만원(₩50,000,000)을 지급하여야 한다.                                                                                                                                             |             |
| 귀하가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가맹점의 운영을 일방적으로 중단·폐업 처리하거나 당사가 사용을 허락한 영업표지를 사용하지 않는 점포로 운영 또는 양도한 경우 귀하는 당사에게 위약벌로 금오천만원(₩50,000,000)을 지급하여야 한다. 특히 귀하가 제33조 제2항의 사유를 제외하고 당사의 귀책사유 없는 이유로 계약기간 내에 해지를 하는 경우에는 위약벌로서 금오천만원(₩50,000,000)을 당사에 지급하여야 한다. |             |
| 귀하가 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 후 당사가 계약 기간 내에 사용을 허락한 영업표지 등을 상호, 간판, 기타 표시물 등에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가맹점 운영과 관계된 서류(계약서, 매뉴얼 등)를 계약 종료일까지 반환하지 않는 경우 귀하는 계약 종료 익일부터 위약벌로 1일당 금오십만원(₩500,000)씩 당사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             |
| 손해배상 사유                                                                                                                                                                                                                                                 | 관련 계약조문     |

##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 1. 상담·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과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 구분             | 내용                                                      | 소요기간        | 소요비용                                           |
|----------------|---------------------------------------------------------|-------------|------------------------------------------------|
| 합계             | -                                                       | 47일 내외      | <b>IV.</b><br>가맹점사업자의 부담,<br>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참조 |
| 가맹희망자 문의       | - 전화문의 접수<br>-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 D-47        |                                                |
| 사업 설명·상담       | -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제공<br>-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br>- 가맹희망자 상담 | D-46~45     |                                                |
|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 - 입지선정<br>-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                              | 필요시 실시      |                                                |
| 최종 협의          | - 개설 승인                                                 | D-34~31     |                                                |
| 가맹계약 체결        | - 계약 체결                                                 | D-30        |                                                |
| 가맹금 예치         | - 가맹금 예치                                                | D-30        |                                                |
| 실내의 공사착수       |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 D-30~29     |                                                |
| 인테리어 공사        | - 공사 실시                                                 | D-29~4(25일) |                                                |
| 교육 실시          | - 점포운영교육 실시(공사시간 중)                                     | D-18~4(14일) |                                                |
| 점포 개설          |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 D-day       |                                                |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 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에 7일 후로 단축됩니다.

###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가맹계약 당사자는 계약의 해석 또는 계약에 의해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법적 절차에 이르기 전까지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합니다.

대화과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연락처: 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법적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관할법원에 대해 약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Ⅶ.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부담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 점포환경 개선사유                                                                                                                                                         | 가맹본부 부담 비용항목                                                                                                                                                      | 가맹본부 부담비용 비율                                                                                                                       | 지급절차                                                                                                                                                                                                                                                                                                                                                                                                                                                                                     | 비용부담 제외사유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li> <li>○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상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하는 비용은 제외)</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간판교체 비용</li> <li>○인테리어 공사 비용(장바구니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상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하는 비용은 제외)</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 환경개선 : 20%</li> <li>○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 환경 개선 : 40%</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분할지급 가능)</li> <li>○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 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 &lt;분할지급 시 절차&gt;</li> <li>○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점포환경개선 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하자 영향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li> </ul> |

###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 3. 경영 활동 자료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 활동에 대한 경영지도를 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대상 및 내용                                           | 절 차                                                                                                                                   | 비용부담    |
|-------------|---------------------------------------------------|---------------------------------------------------------------------------------------------------------------------------------------|---------|
| 가맹본부 요청 시   | 계약이행, 표준화, 시장조사, 판촉, 가맹점의 경영상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분석 및 지도 |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사→경영지도 후 가맹본부 담당자가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 가맹본부 부담 |
| 가맹점사업자 요청 시 | 특별경영지도                                            | 가맹점사업자 경영지도 요청→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사→경영지도 후 가맹본부 담당자가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 가맹점 부담  |

### 4. 신용 제공 등 내역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 Ⅷ. 교육 및 훈련에 대한 설명

### 1. 교육·훈련의 주요 내용

당사는 요거트바이피플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주요 내용                          | 교육방식               | 기한     | 비고    |
|-------|--------------------------------|--------------------|--------|-------|
| 신규 교육 | 회사 소개, 매뉴얼 교육<br>운영교육, 입금 방법 등 | 실습교육<br>개별 또는 집단교육 | 개점 전까지 | 필수 교육 |
| 수시 교육 | 경영상의 필요                        | 개별 또는 집단교육         | 개별 협의  | 필수 교육 |
| 특별 교육 | 가맹점사업자의 요청 내용                  | 개별교육               |        | 선택 교육 |
| 재교육   | 가맹점관리 및 운영                     | 개별교육               |        | 필수 교육 |

###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귀하가 요거트바이피플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최소시간          | 비용(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 비고          |
|-------|---------------|---------------------------|-------------|
| 신규 교육 | 총 50시간 (총 2주) | 1,100                     | 최초 계약 시 이수  |
| 수시 교육 | 개별협의          | 1인 1일 기준 110, 특수사항은 실비 청구 | 필요시 실시      |
| 특별 교육 |               | 1인 1일 기준 110, 특수사항은 실비 청구 | 요청시 실시      |
| 재교육   |               | 1인 1일 기준 110, 특수사항은 실비 청구 | 일정자격 미달시 실시 |

교육시 출장비(숙박비, 교통비 등) 실비가 발생하는 경우 상기 비용 외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당사는 출장비 내역을 귀하에게 제공하고, 귀하는 해당 출장비를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단, 당사의 출장비 내역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내역 및 금액에 대하여 협의할 수 있으며, 이 외의 경우에는 출장비 내역을 귀하가 수령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출장비 실비를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교육·훈련의 시간은 교육 상태와 일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습니다.

### 3. 교육·훈련의 주체

교육·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당사자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가맹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맹계약 당사자가 원하여 당사자 외 직원도 같이 교육을 받게 되면 인원 추가에 따라 비용도 추가됩니다.

### 4. 교육·훈련 불참 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기한 내 신규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개점이 지연될 수 있으며 개점 이후 전체적으로 실시되는 교육에 교육 대상자가 불참할 경우 가맹점운영권 제한 사유 및 계약 갱신 거절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 연번 | 지역 | 명칭 | 소재지 |
|----|----|----|-----|
|    |    |    |     |

[ 당 사는 직영점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단위 : 년, 개월)

| 2023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 비고 |
|---------------------|----|
|                     |    |

[ 당 사는 직영점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산정기준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 2023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 비고 <sup>①</sup> |
|----------------------|-----------------|
|                      |                 |

[ 당 사는 직영점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첨부1>

<재무제표 등>

당사는 2021~2023년 무실적 사업자에 해당합니다.  
(2021년~2023년 매출액 : 0원)

<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사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객지원담당관실(044-200-4010)** 또는 **가맹거래과(help@ftc.go.kr)**로 문의하십시오.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이 정보공개서는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http://franchise.ftc.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첨부2>

### <가맹점 필수 품목>

※ 귀하는 아래의 품목을 필수적으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물품의 규격과 수량은 가맹점 실측 시 그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설비 및 기기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상기 표에 기재된 내용은 2021년 09월을 기준으로 한 내용으로 당사의 경영상의 결정이나 거래관계의 변경으로 인하여 그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용 변경 시 홈페이지, 이메일, 서면, 기타 방식에 의한 별도 공지 등의 방법으로 안내합니다. 필수 품목 사용의 준수는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위한 필수적인 의무사항으로 가맹점사업자는 정당한 거절 사유가 없는 한 가맹본부로부터 최종적으로 전달받은 필수 품목의 사용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첨부3>

### <가맹점사업자의 인근 가맹점사업자 현황>

※ 귀하가 장래 점포를 개설하고자 하는 지역에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당사의 가맹점사업자의 상호, 소재지, 전화번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    | 가맹점명칭 | 소재지 | 전화번호 |
|----|-------|-----|------|
| 1  |       |     |      |
| 2  |       |     |      |
| 3  |       |     |      |
| 4  |       |     |      |
| 5  |       |     |      |
| 6  |       |     |      |
| 7  |       |     |      |
| 8  |       |     |      |
| 9  |       |     |      |
| 10 |       |     |      |

<첨부4> 본 페이지의 내용은 가맹희망자가 자필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열은 회색 글씨는 따라서 써주세요.

(가맹희망자 보관용)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제공확인서

1. 본인은 요거트**바이피플** 정보공개서(인근 가맹점사업자 현황 포함)와 가맹계약서를 제공 받았으며 이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검토하였습니다.

|       |  |     |       |
|-------|--|-----|-------|
| 성명    |  | 연락처 |       |
| 주소    |  |     |       |
| 제공 장소 |  | 제공일 | 년 월 일 |

2. 또한 귀사의 정보공개서를 수령하는 경우에 귀사의 영업비밀 또는 사업에 관한 중요정보를 무단으로 유출 또는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을 것임과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민 /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질 것을 약속합니다.

년 월 일 가맹희망자 성명: (인)  
가맹본부: 주식회사 에이치큐코리아 대표 장진수, 김가을 (인)

-----가맹희망자, 가맹본부 간인 후 절취(아래쪽을 가맹본부에서 보관)-----

(가맹본부 보관용)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제공확인서

1. 본인은 요거트**바이피플** 정보공개서(인근 가맹점사업자 현황 포함)와 가맹계약서를 제공 받았으며 이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검토하였습니다.

|       |  |     |       |
|-------|--|-----|-------|
| 성명    |  | 연락처 |       |
| 주소    |  |     |       |
| 제공 장소 |  | 제공일 | 년 월 일 |

2. 또한 귀사의 정보공개서를 수령하는 경우에 귀사의 영업비밀 또는 사업에 관한 중요정보를 무단으로 유출 또는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을 것임과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민 /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질 것을 약속합니다.

년 월 일 가맹희망자 성명: (인)  
가맹본부: 주식회사 에이치큐코리아 대표 장진수, 김가을 (인)